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1. 9. 7. (수) 10:00~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등 2건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	1
2.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4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1년 8월 24일
- 나. 제출자: 강철우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11년 8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1년 9월 2일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를 군이 시행함에 있어 각종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3조: 적용 범위는 군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공사
- 제4조: 군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여건을 감안 공사금액이 1억 원 이하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였음.
- 제5조: 군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실공사근절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였음.
- 제6조: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함

- 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공사현장 방문하고 부실시공 등이 있을 시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일지를 작성 보관토록 규정.
- 제9조: 군수는 기획감사실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함.
- 제12조: 군수는 공사비 2억 원 이상 또는 공기가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 공사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함.
- 제13조: 군수는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공사안내 표지판 적정게시, 군민 불편사항 등을 감시토록 함.
- 제15조: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를 군(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이 시행함에 있어 각종 건설공사를 보다 견실하게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나.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목적, 용어의 정의)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안 제3조(적용범위)는 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는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5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는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하여 시행자에게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는 조항으로 필요조항으로 검토됨.
- 안 제6조~제8조(공사시행의 통보, 공사감독, 현장확인 및 시행)는 공사를 시행

할 때는 읍·면에 공사시행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공사감독 방법 및 현장확인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안 제9조~제11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 신고·접수, 부실공사 신고처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신고센터 설치, 신고·접수, 신고사항 처리방안을 명시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제13조(예비 준공검사 설치해야 명예감독관 위촉)는 준공검사 전 예비준공검사 실시 방법과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안 제14조(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는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주변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을 명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제16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공사실명제)는 부실공사 업체의 제재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공사실명제를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7조(실비변상)는 명예감독관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1년 8월 24일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년 8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1년 9월 2일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식재의 공급,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무상급식 등의 내용을 신설·확대하여 전부개정 함으로써, 우리 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을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급식경비”를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 정의하고,
 -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및 개선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급식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규정함
- 학교급식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함
- 학교급식 지원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촉하되,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을 하며,
 - 급식지원센터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지도·감독 및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군수는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고,
 -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 하도록 함
-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5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안정성이 확보된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무상급식 등의 내용을 신설·확대하여 전부 개정함으로써

나. 우리 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2조(목적, 정의)는 무상급식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조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안 제3조(군수의 책무)는 무상급식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망라한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제7조(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방법, 지원 받으려는 자의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 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제12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수당 등)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소위원회 구성, 수당 등을 명시한 조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4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는 군수의 급식지원센터의 지도·감독 사항과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 항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발 의 자: 산업건설위원회

나. 수정내용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제1항 중,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제3항 3호중,
 - 3. “학부모단체 1명”을, ⇒ 3. “학부모단체 2명”으로 수정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 중,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를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한차례만”을 삭제)
-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별표1)

거창군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창조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거창교육지원청 1명 3. 학부모단체 1명 4. 교원단체 1명 5. 농민단체 2명 6. 학교 영양사 단체 1명 7. 시민단체 1명 8. 지역언론단체 1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p> <p>⑤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u></p> <p>⑥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 할 때,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좌 동></p> <p>③ <좌 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 동> 2. <좌 동> 3. 학부모단체 2명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좌 동> 8. <좌 동> 9. <좌 동> <p>④ <좌 동></p> <p>⑤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한차례만” 문구삭제)</u></p> <p>⑥ <좌 동></p>